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9회 임시회
2020. 3. 20.(금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완석

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연종석 의원 등 6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0년 3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

다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점검,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
라.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마.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‘안전지킴이’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○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상위법령인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제2조의2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음.

-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·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
- 안 제3조 및 제4조는 어린이놀이이설의 안점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과 점검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각각 규정함.
- 안 제5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·고시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안 제6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지킴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7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표창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입법예고('20. 2. 27.~'20. 3. 3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○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○ 「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